##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583

발의연월일: 2024. 10. 7.

발 의 자: 강득구·김기표·김준형

박용갑 • 박홍배 • 이기헌

이학영 · 전현희 · 정성호

채현일 • 추미애 의원

(11인)

#### 제안이유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투명한 경영을 위하여 임원 구성에 근로자가 참여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도록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 중임.

그런데, 준정부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의 임원 구성 요건에는 '노동이 사제'도입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복지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도록 임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법률 제 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26조제3항에 따라"를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사람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하며, 같은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 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근로자 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임원) ①・② (생 략)	제16조(임원) ①・② (현행과 같
	<u></u> 이 교
③ 비상임이사(제4항에 따라	③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 중에서 「공공기관의 운영	
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제29조에 따른
<u>따라</u>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
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에	한 사람 중에서
해당하는 비상임이사는 같은	
수로 하되, 노사 어느 일방이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사회보험 또는 근로복지사업	3
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한 사람으로서 「공공기관의	<u>사람</u>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u>&lt;신 설&gt;</u>	4.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 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근로자대표(근 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 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 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④·⑤ (현행과 같음)

④·⑤ (생 략)